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용자 접속정보 공개〉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7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용자의 접속정보 공개 조치 등(안 제44조의27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07인

나. 발 의 일 : 2026. 1. 15.

다. 회 부 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 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용자의 접속정보 공개 조치 등(안 제44조의27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44조의27제1항).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제1호)
 -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제2호)
 - 실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제3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4호)
 -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는 접속정보가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고(안 제44조의27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접속정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 여부 및 기록 보존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7제3항 및 제4항 신설).
-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의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한 경우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에 따른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7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4조의27(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접속정보”라 한다)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u> <u>2.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u>

3. 실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이하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접속정
보가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자
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
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접
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에게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
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
터 제11항까지, 제출받은 자료

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한 경우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절차·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유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대해 공감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에서 부과하는 의무 이행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가 VPN을 사용하였는지 실제 국가에서 접속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 개정 이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우회 접속자의 실제 국가를 아는 것보다는 용이할 수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가 매우 많고 그러한 이용자들의 우회접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은 VPN서비스의 특성과 구조를 감안할 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실시간 우회접속 여부 탐지가 어려운 이상, 그러한 접속 정보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접속정

보확인의무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공개 대상 정보인 접속정보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할 여지는 없는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여지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¹⁾.
 - 접속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와 게시판 이용 시 접속 국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보를 타인이 확인하도록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나아가, 접속 국가에 대한 정보는 차치하더라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셋째,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검토가 필요함.

1)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74,252(병합) 전원재판부

- 외국인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방지, 외국인의 내국인 국적 사칭과 허위 정보 유포·여론조작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회 접속 여부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접속 국가와 우회 여부만 나타난다면 실제 접속 국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알 수 없고, 우회 접속자의 실제 국가에 대해서 재차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접속정보를 통해서는 단순히 접속 국가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이용자의 국적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재외국민의 VPN을 통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줄 수 없음을 고려하여야 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게시자가 우회접속 시 제3의 국가로 오인할 수 있고, 사업자들이 우회접속 여부를 완벽히 탐지하기 어려우며²⁾, 탐지가 어려운 이상 비용 지원 및 책임 감면, 과태료 신설 등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인터넷기업협회는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사업자의 자체적 매크로 방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문제, 국내 사업자 집중 규제

2) 우회접속 서비스 제공자들은 접속지역 및 인터넷 이용기록 암호화를 대가로 이용료를 받으므로 접속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수익모델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며, 그러한 특성 및 수익모델 고려 시 해당 사업자들의 접속 정보 제공 가능성이 낮다고 함.

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정보통신서비스 중 게시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